- 1. 휴학
 - 가. 신청 기간

신청 기간	휴학 신청 자격	등록금 반환		
8. 1. (화) 00:00 ~ 9. 14. (목) 23:59	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	전액 반환		
9. 15. (금) 00:00 ~ 11. 14. (화) 23:59	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/ 일반휴학신청 마감	10. 2. (월)까지 5/6 반환		
		10. 30. (월)까지 2/3 반환		
11. 15. (수) 00:00 ~ 12. 1. (금) 23:59	질병·출산·육아 사유로만 휴학 신청 가능	11. 29. (수)까지 1/2 반환		

나.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

- 휴학 승인을 받은 <u>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, 신청했던 휴학이 자동으로 연장</u>되며, 휴학 을 종료하고 복학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해야 하고,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, 변경하고자 하는 휴학을 신청해야 함
 - 가) 신청한 휴학의 정해진 연한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, 그다음 학기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 신청 혹은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
 - ※ 예시) 육아휴학 신청 후 2학기가 지났을 때, 별도로 복학 및 휴학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,
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학이 남아있더라도 휴학만료제적 처리됨
 - 나) 학기 중간에 휴학을 변경하였을 경우, 학기 2/3를 기준으로 이전에 변경하면 해당 학기는 변경 한 휴학으로 처리되고, 이후에 변경하면 해당 학기는 변경하기 전 휴학으로 처리됨
- 2) 모든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(석사 4년, 박사 7년, 통합 8년)에 산입하지 않으며, 최소 1회 휴학 기 간은 1학기이고, 연속으로 사용하는 횟수는 연한 내에서 제한되지 않음
- 3) 신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으나,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, 그 리고 건강상의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일반휴학은 허가함
- 4) 장학금 수혜자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<u>장학금 취소(반환) 후 휴학 신청 가능</u>
 (장학금 문의: 2123-3234, 2123-8422)
 - ※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BK21플러스 사업 담당자와 상의하기 바람
- 5)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 및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며, 이를 완료하고 학기 중간에 휴학했을 경우, 해당 내용이 삭제됨 (관련 문의 : 2123-3236)
- 6)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처리를 위해 연세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(등록금 문의 : 2123-3229)
- 7) <u>휴학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도교수님에게 승인받기를 바람</u>
- 8) <u>학·연·산 학생</u>은 재직 기관의 휴학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휴학 승인 가능
- 9) **계약학과 학생**은 소속 학과를 통해 대학원으로 휴학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휴학 승인 가능

다. 신청 및 승인 절차

Step1	⇔	Step2		Step3		Step4
연세포탈에서 신청		신청자가 학과로 승인요청		대학원	⇔	연세포탈에서
(http://portal.yons		* 약과에 따라 시노교수 및		승인		승인 여부
ei.ac.kr)		대학원 주임교수 승인 필요				확인

- 신청 절차: 연세포탈서비스(<u>http://portal.yonsei.ac.kr</u>)⇒학사정보시스템⇒포탈 로그인⇒학사행정⇒학 적⇒학생⇒휴학신청(대학원)⇒휴학구분선택⇒필요 정보 입력⇒개인정보 이용동의⇒신청
 ※ 육아휴학, 입대휴학, 일반휴학(질병)은 증빙서류 업로드 ('라'항의 휴학 안내 및 제출서류 확인)
- 2) 승인 확인: 연세포탈서비스(<u>http://portal.yonsei.ac.kr</u>)⇒학사정보시스템⇒포탈 로그인⇒학사행정⇒학 적⇒학생⇒학적정보조회⇒학적상태 확인
- 3) 연세포탈로 휴학 신청이 안 되는 다음의 경우는 휴학원서 작성 후 양식 내 필요한 승인을 받아 대 학원 교학팀(스팀슨관 201호)으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gradsys@yonsei.ac.kr)로 제출 바람
 <u>http://graduate.yonsei.ac.kr</u> > 학사안내 > 각종 양식 > 학적 관련 서류 양식 > 휴학원서 가) 창업 휴학
 - ※ '라'항의 휴학 안내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대로 신청 바람
 - 나) 해당 학기 복학 승인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였거나, 복학 신청 기간 이후 다시 휴학하려는 경우 * 복학 신청 기간 이전에는 복학취소 신청
 - 다) 각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(석사 8학기, 박사 14학기, 통합 16학기)
 - 라) 기존 휴학에서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(단,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포탈에서 신청 가능)

라. 휴학 및 제출서류 안내

- 1) 일반휴학
 - 가) 일반휴학은 재적 중에 석사과정은 2년(4학기),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(6학기)까지 신청 가능
 - 나) 신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나,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,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사유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는 허가함
- 2) 입대휴학
 - 가) 의무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, 입대 일자가 포함된 학기부터 전역 일자가 포함된 학기의 다음 학 기까지 입대 휴학 기간으로 인정되며, 이는 일반휴학 연한에 포함하지 않음(3월~8월에 전역하 였으면 그다음 연도 1학기에, 9월~2월에 전역하였으면 돌아오는 연도 2학기에 복학 및 다른 휴 학을 신청해야 하고, 입대휴학 기간은 최대 7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)
 - 나) 제출서류: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

※ 복무 시작 1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- 다) 입대휴학 후 복학 또는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, 전역(복무 만료)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) 육아휴학
 - 가)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임신,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 유로 휴학할 때는 1년(2학기)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일반휴학 연한에 포함하 지 않음.
 - 나) 육아 휴학 가능 기간 1년 소진 후, 다른 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 됨.
 - 다) 임신, 출산, 육아 사유 상관없이 자녀 1명당 1회의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으며.(자녀 1명에 대해서 임신, 출산, 육아 각각의 사유마다 여러 번의 육아휴학은 사용 불가) 한 학기만 사용하고 복학할 수 있으나, 두 학기를 사용하려면 연달아서 사용해야 함
 - 라) 제출서류: 임신진단서,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임신 사실 혹은 출생 및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)
- 4) 질병 휴학

가) 일반 휴학기간으로 산입됨

- 나) 제출서류: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(보건복지부 지정) 상급 종합 병원 이상에서 발급 된 전문의 진단서, 건강센터 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- 다) 건강센터 확인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, 건강센터(학생회관 2층, 02-2123-3346)를 방문 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(자세한 기준은 별첨 1 자료 참고)
 - 입원 등의 이유로 최소 1개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
- 본인 직접 방문(예외: 입원 중, 거동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함)

5) 창업·창업준비 휴학

- 가)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.
- 나)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, 창업준비 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.
- 다) 절차: 창업지원단 신청 → 창업지원단 승인 → 대학원 창업 휴학 신청
- 라) 창업휴학 신청 공고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<u>일반휴학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</u> 확인 필요: 홈페이지(23-2학기 창업휴학), 문의처 02-2123-4322

마. 휴학 취소

1) 휴학 승인을 받은 후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

- 복학 신청 기간 중에 '취소원'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휴학 취소 신청 가능

- (이 외 기간에는 취소 불가)
- * http://graduate.yonsei.ac.kr > 학사안내 > 각종 양식 > 학적 관련 서류 양식 > 취소원
- * 양식을 작성하고 양식 내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(스팀슨관 201호)으로 방문 제 출 혹은 이메일(gradsys@yonsei.ac.kr)로 제출하기 바람

2. 복학

가. 신청 기간

차수	학생 복학 신청 기간	수강 신청 기간 / 수강 변경 기간			
1차	7. 17. (월) 00:00 ~ 8. 15. (화) 23:59	8. 16. (수) ~ 8. 22. (화) / 9. 5. (화) ~ 9. 7. (목)			
2차	8. 16. (수) 00:00 ~ 8. 25. (금) 23:59	등록 기간 / 추가 등록 기간			
3차	8. 26. (토) 00:00 ~ 9. 3. (일) 23:59	8. 18. (금) ~ 8. 24. (목) / 9. 8. (금) ~ 9. 14. (목)			
- 위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.					

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는 1차 및 2차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복학 신 청을 했을 때만 발급 가능(3차 복학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)

나.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

Step1		Step2		Step3
연세포탈에서 신청	\Rightarrow	복학은 기본적으로 별도의	\Rightarrow	* 학적 변경 확인 후
(http://portal.yonsei.ac.kr)		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		수강 신청 및 등록

- 1) 신청 절차: 연세포탈서비스(<u>http://portal.yonsei.ac.kr</u>)⇒학사정보시스템⇒포탈 로그인⇒학사행정⇒학 적⇒학생⇒복학신청⇒개인정보 이용동의⇒신청
- 2)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
 - 가) 전역 이후 복학 신청: 전역 사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전역 증명서 혹은 병적 증명서 등)
 - 나) 전역 전 복학 신청 & 복학하는 학기에 전역 예정: 소속 부대장의 취학 승인서, 전역 예정 일자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다) 전역 전 복학 신청 & 복학하는 학기에 전역 X: 소속 부대장의 취학 승인서, 입대휴학을 다시

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, 전역 예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* 나, 다의 경우 남은 복무 기간에 대한 입대휴학 신청 불가
- 3) 다음 경우는 학과와 대학원의 승인 절차 후, 학적에 반영됨
 - 가) 외국인 학생의 복학: 별도 신청 서류 없음
 - 나) 입대휴학 후 복학: 위 내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
 - 다) <u>학·연·산 학생의 복학:</u> 재직 기관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 - 라)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생의 복학: 재직 기관의 재직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
- 4) 학적 변경 및 승인 확인 방법: 연세포탈서비스(<u>http://portal.yonsei.ac.kr</u>)⇒학사정보시스템⇒포탈 로그인⇒학사행정⇒학적⇒학생⇒학적정보조회⇒학적상태 확인
- 5) 연세포탈로 복학 신청이 안 되는 경우, 복학원서 작성 후 학과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(스팀슨 관 201호)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gradsys@yonsei.ac.kr)로 제출하기 바람 * http://graduate.yonsei.ac.kr > 학사안내 > 각종 양식 > 학적 관련 서류 양식 > 복학원서

다. 복학 취소

- 1) 복학 승인 받은 후 복학 취소를 원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
 - 미등록자는 2023. 9. 3. (일)까지 '취소원'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복학 취소 가능
 - 복학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등록을 했을 경우, 복학 취소가 되지 않고, '휴학 신청'으로 처리 가능
 - * http://graduate.yonsei.ac.kr > 학사안내 > 각종 양식 > 학적 관련 서류 양식 > 취소원
 - * 양식을 작성하고 양식 내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(스팀슨관 201호)으로 방문 제 출 혹은 이메일(gradsys@yonsei.ac.kr)로 제출하기 바람

3. 제적

가. 휴학만료제적: 정해진 휴학 기간이 끝난 후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
석사과정 일반휴학: 4학기 / 박사 및 통합과정 일반휴학: 6학기 육아휴학: 2학기 / 입대휴학: 최대 7학기 내 복무 기간 + 1학기 창업 및 창업준비휴학: 최대 2학기 내 신청한 학기

- 나. 미등록제적: 재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- 다. 성적불량제적: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, 학 사경고를 총 2회 받으면 제적 처리됨.
- 라. 학기만료제적: 정해진 논문 제출 시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
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: 석사과정 4년, 박사과정 7년, 석.박사통합과정 8년

1) 위 기간에 휴학 기간과 제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.

- 2)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간 추가 연장 가능.
- 마. 징계에 의한 제적: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한 제적 처리되
 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- ※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반환해 주지 않음.

▶원활한 학사안내를 위하여 연세포탈시스템의 연락처를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연세포탈시스템(<u>http://portal.yonsei.ac.kr</u>) → 학사정보시스템 → 포탈 로그인 → 학사행정 → 학적

→ 학생 → 학적정보조회 → 개인정보변경

연세대학교 대학원